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구 미 시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2024년도분 지방채 발행 ⇨ 30,000백만원

1)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 30,000백만원

2. 제안이유

가. 경제산업국

1) 산단혁신과

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2024) : 30,000백만원

(1)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
부로부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으로,

(2) 사업추진을 통하여 1산단(공단동 249번지 일원) 일원에 산업
과 문화 등이 융합된 산업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오피스·복지시설·행복주택 등의 지원시설 확보를 통하여, 1산
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 중이며, 또한,
공공주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선도모델로 부각될 예정임.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 및 시공단가 상승 등으
로 인해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단 도시재생혁
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재정여건 상
2024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
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발행개요

□ 2024년 지방채 발행

○ 세부내역

(단위:억원)

부서명	사 업 명	신청액	소관	비고
계	1개 부서, 신청 1건	300		
산단혁신과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300	산업건설 위원회	기발행 130억원

4. 주요내용

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30,000,000,000원
- 차입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리 : 1.8%(변동금리)
- 상환기간 : 최장13년(만기일시상환) ※ 필요 시 최장35년까지 연장가능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캐피탈 콜*(Capital call)

* 캐피탈 콜(Capital call) : 융자금 전체를 미리 설정한 뒤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식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5 / 5년간
- 위치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172억원 ※ 국 250, 도 42, 시 125, 부처연계 137, LH 353, 기타 1,265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8,334m², 시설면적 99,155m²
- 공정율 : 30%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위치도 및 조감도(안)>



3)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부에서 2019년 12월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지구 내 시설위치 이동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 및 시공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24년 착공 이후 지급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실질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절실함.

4)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17,159	64,613	45,173	107,373	
국 비	25,000	25,000	-	-	
도 비	4,170	4,170	-	-	
시 비	12,500	6,820	5,680	-	
LH	35,346		7,000	28,346	
지방채	93,000	13,000	30,000	50,000	
기 타	47,143	15,623	2,493	29,027	

5. 근거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항

다.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제1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⑤항 생략

□ 「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나 용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
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에서 지원한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정 윤 호
	팀 장	조 민 규
	담 당 자	조 형 우 (480-2535)